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적절한 수급 및 양성을 위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 1. 30. 공포, 2026. 1. 31.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방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1.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과목 및 교육 시간 점검표
 3. 시설 및 장비 현황 점검표
 4. 교원 현황 및 교원 자격 증명자료
 5. 수업연한, 모집인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이 포함된 운영 계획서
 6. 기타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학등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구조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대학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③ 신청대학등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대학등에 통보해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25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목,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2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목,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학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0호의3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대학등의 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대학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신청대학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결과의 공개) 응급구조 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교의 장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응급구조 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제24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6조의4제4항 제2호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교육과목 및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중단
2. 지정기준 미달
3. 교육과정 또는 입학정원의 변경
4. 전임교원의 변동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

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통보해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취소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가 된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및 양성과정을 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25조의 제목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응급구조사”는 “2급 응급구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구조사양성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법 제36조의4제5항에 따라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게 해당 사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통보해야 한다.

⑦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

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한다.

별표 10 및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의2 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1급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채용되어 3년 이상 응급구조학 전공 수업을 강의한 사람은 별표 10 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할 때 같은 규정에 따른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전임교원으로 간주한다.

② 제24조의2 및 별표 10 제2호나목과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별표 10 제2호나목과 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점까지 해당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제출 시 연도별 채용계획서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예정 시점(단, 2028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까지의 학과 운영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여부 공개의 적용례) 제24조의3 개 정규정은 최초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 사실을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표 10]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교육과목 기준

영역	과목	기준 학점	비고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17학점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 이송*, 재난관리학, 상당·구조·이송 관련 기타 교과목	12학점	*실습 포함
응급 환자평가 및 관리	응급환자평가*, 응급환자관리*,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기타 교과목	12학점	*실습 포함
전문 응급처치학 각론	심전도*, 기본인명소생술*,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외상처치학*, 전문내과응급처치학, 전문기도관리*, 특수상황응급처치(임산부, 소아, 노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	33학점	*실습 포함
법령	응급의료관련 법령	3학점	
통합 실습	통합시뮬레이션*, 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 ¹ , 구급현장실습 ²)	15학점	*실습 포함 ¹ 응급의료기관 등 360시간 이상 ² 소방서 등 180시간 이상

※ 비고
1.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교과목으로 본다.
2. 실습 포함 교과목은 실습 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인력 기준

다음 각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학생정원 기준, 학생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할 것
나.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전임교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라. 실습이 가능한 조교를 1인 이상 확보할 것

※ 비고
1.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2.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학적으로 정한 응급구조학과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만, 응급구조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한 학년의 입학정원을 의미하며, 응급구조학과와의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정원은 지정신청 당시 제학 중인 각 학년의 입학정원의 합계를 의미한다. 신설하거나 편제가 완성되지 않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편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3. 전임교원은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에서 교수활동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4. 교원 중 전임교원 비율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교원의 수는 학생정원을 20으로 나눈 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5. 조교는 해당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교육시설, 장비 기준

가. 교육시설 기준

시설명	기준	비고
강의실	(1㎡×교육생)+ 16.5㎡ 이상	• 학년별 전용 강의실을 1개 이상 두어야 하며, 다른 학과 공동 활용 가능
기본인명소생술(BLS)		• 실습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실습하기에 적절한 공간이어야 함
전문외상처치술(ATLS)		• 실습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강의실 및 실습실 간 공동 활용이 가능하나, 실습을 전용으로 하는 실습실이 1개 이상이어야 함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학		• 타 학과와 공동 활용 가능
전문심장소생술(ACLS)		

나. 장비 기준

장비명	보유기준	비고
구급차 또는 구급차 모형	1개 이상	
중증도 분류 훈련 세트	1세트 이상	분류표, 분류시트, 분류띠 등이 포함된 다수 사상자 실제 훈련세트
다수사상자 도상 훈련키트	15명당 1세트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 도상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세트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3명당 1개	

장비명	보유기준	비고
기본 심폐소생술 마네킹	성인(전신)	10명당 1대
	성인(상반신)	5명당 1대
	소아	10명당 1대
	영아	5명당 1대
성인 전문심폐소생술(ACLS) 시뮬레이터		30명당 1개
교육용 수동제세동기		15명당 1개
기계식 가슴압박 소생기		30명당 1개
12유도 심전도 측정기계		30명당 1개
기도유지 마네킹	성인	5명당 1대
	소아	15명당 1대
	영아	15명당 1대
	기도폐쇄	5명당 1대
비디오 후두경		15명당 1개
이동형 인공호흡기 (Portable Ventilator)		1개 이상
기관내 삽관 세트		5명당 1개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10명당 1개
성문 외 기도기	후두 마스크(LMA)	5명당 1개
	후두관 기도기	5명당 1개
	아이젤(I-gel)	5명당 1개
휴대용 산소소생기		15명당 1개
휴대용 흡인기		5명당 1개
수동식 인공호흡기 (BVM)	성인	5명당 1개
	소아	15명당 1개
	영아	5명당 1개
전신 마네킹	구조실습	10명당 1개
	외상처치	10명당 1개
경추보호대 세트		2명당 1개
외상표시 모듈세트		15명당 1개
지혈실습 마네킹		10명당 1개

제 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1. 학 교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제 호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기준) ①영 제25조의3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목,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② 영 제25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교육과목,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신설>	제24조의2(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신청대학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

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과목 및 교육 시간 점검표
3. 시설·장비 현황 점검표
4. 교원 현황 및 교원 자격 증빙자료
5. 수업연한, 모집인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6. 기타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학등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구조사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대학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이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신청대학등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대학등에 통보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신청대학등의 장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다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 지정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 드는 실비(實費)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심사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대학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신청대학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결과의 공개) 응급구조 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교의 장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응급구조 관련 학과를 개설한 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신 설>

제24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36조의4제4항 제2호에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예정이거나 발생하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중단

2. 지정기준 미달

3. 교육과정 또는 입학정원의 변경

4. 전임교원의 변동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게 해당 사유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후 그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	사 양성대학등의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통보해야 한다. ⑦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제6항에 따른 지정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에 통보해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이 제6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해당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	---	---

<신 설>	해 공고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취소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가 된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및 양성과정을 수료 중인 사람에 대하여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②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1의 교육과목 중 구급차 동승실습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제25조(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양성과정)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의 교육과목 및 시간은 별표 11과 같다.		